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(2020년)

□ 한국항공우주연구원(8건)

구 분	시정 • 처리요구사항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한국항공우주 연구원	1.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·시행계획·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(완료)	o 시정·처리결과 -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운영개념서 작성완료('20.2) -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작성완료('20.1) -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계획 작성완료('19.3)
	2. 위성통합운영시스템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, 국가정보원과의 양도 관련 사안을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놓을 것 (완료)	
	3. 차기 통신 위성 국산화 차원에서 천리안 1호의 대체 위성에 대하여 신속 하게 준비할 것(완료)	- 천리안위성 1호 통신임무 후속위성

구 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4. 미국 항공우주국이 달 탐사 궤도선 발사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기술 검토 의견을 보이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대응·설득할 것(완료)	○ 시정·처리결과 - 미국 항공우주국(NASA)은 두번의 대면회의('19.10월, 11월)를 통해 당초 목표하였던 달 고도 100km 원궤도에서 1년간 임무수행이 가능한 기술 방안(달 전이궤적을 BLT 방식으로변경)을 제안하였으며, 항우연은 '19.12월 달 전이궤적 변경(BLT)에따른 영향성 검토를 거쳐 기술적으로수용할 것을 결정하였음 - '20.1월 사업단장이 미국 항공우주국책임자를 방문 협의 후 정상적인상호 협력관계를 회복하였으며, BLT궤적의 공식 변경은 '20.3월 달 탐사사업추진위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이 향후 추진계획 - 미국항공우주국과의 상호 협력관계는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,이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
	5. 달 탐사 궤도선 발사에 대하여 향후 원장·단장의 은폐행위가 드러난다면,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원장을 비롯한 해당 사업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(완료)	- '19.11.26부로 달탐사사업단장이 교체 되었으며, 신임 단장은 현재 달탐사
	6.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저비용 소형 발사체 개발과 초소형·소형 위성 발사의 추진을 검토할 것 (완료)	○ 시정·처리결과 -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소형발사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체계사업의 착수에 앞서 소형발사체의 임무 시스템 설계 등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연구('20년~'23년)를 수행중임

구 분	시정 • 처리요구사항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	o 향후 추진계획 -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성과 전략성이 확보된 소형발사체 시스템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음
	7. 2단형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(완료)	 ○ 시정・처리결과 - 체계사업의 특성 상 선행연구를 통해 시스템설계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 하여야 하므로, 기관 고유 사업으로 소형발사체 선행연구('20년~'23년)를 추진 중임 ○ 향후 추진계획 -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동 연구결과가 소형발사체 체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
	8. 경찰, 소방, 해경 등 재난대응 정부기관의 통합된 재난현장 상황 종합분석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,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· 무인 비행장치에 대한 상시적 예외 법적기준을 제공 하는 등 정책적 · 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할 것(완료)	○ 시정·처리결과 - 관련 법령(항공안전법)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긴급 운항의 예외적인 운용이 가능한 상태임 · 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· 구조, 화재의 진화, 응급 환자 후송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하는 경우 · 예외 법적기준 1)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(무인비행 장치의 적용 특례) <일부개정 2019.11.26.> 2)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 2(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) <일부개정 2018.11.22.> 3)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(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) 제8항및 제9항 <일부개정 2020.5.27.>